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 및 간호수당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5퍼센트(상이 7급 보상금은 9퍼센트) 인상하고, 보상금 인상에 따라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도 연동하여 인상하며, 무공영예수당과 4·19혁명공로수당의 월지급액을 각각 4만원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으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29. ~ 2023. 1. 2.)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2항제1호 중 “249만2천원”을 “263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72만4천원”을 “181만8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05만원”을 “110만8천원”으로 한다.

제27조의4 중 “36만1천원”을 “40만1천원”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1항의 표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276만3천원”을 “291만5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65만9천원”을 “280만5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55만6천

원”을 “269만7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88만3천원”을 “93만2천원”으로 한다.

8.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가. 1급 1항	2,630
	나. 1급 2항	1,818
	다. 1급 3항	1,108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2항, 제27조의4, 별표 4, 별표 5의2 제1호의 월 지급액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월 지급액란, 별표 5의4, 별표 5의5, 별표 6의2,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훈급여금부터 적용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 .>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22조 관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천원)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천원)
1급 1항	3,506	5급	1,828
1급 2항	3,306	6급 1항	1,668
1급 3항	3,165	6급 2항	1,535
2급	2,814	6급 3항	1,031
3급	2,630	7급	568
4급	2,207		

2. 6·25참전 제일학도의용군인: 월 153만5천원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6·25참전 제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구분	월 지급액(천원)
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1) 배우자	1,847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2,142
3) 부모 또는 조부모	1,815
나.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와 6·25참전 제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1,601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1,859
3) 부모 또는 조부모	1,575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588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848
3) 부모 또는 조부모	557

비고: 사망한 사람이 2명 이상인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한 사람 1명당 보상금 지급 구분에 해당하는 월 지급액을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2] <개정 2023. . .>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제26조 관련)

구분	지급기준	월 지급액(천원)
1. 상시 간호수당	가.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나. 상이등급 1급 2항 4116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상이등급 1급 3항 4202호 및 510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915
2. 수시 간호수당	가. 상이등급 2급 4108호, 4203호 및 510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상시 지급 대상이 아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별표 3 제9호에 따른 2개 이상의 상이처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1급이 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상이등급 2급 또는 상이등급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1,94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4] <개정 2023. . .>

무공영예수당 지급 구분표(제27조의2 관련)

구분	월 지급액(천원)
1. 태극무공훈장	470
2. 을지무공훈장	465
3. 충무무공훈장	460
4. 화랑무공훈장	455
5. 인현무공훈장	4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5] <개정 2023. .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구분표(제27조의3 관련)

지급 구분	월 지급액
1.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기본급: 1,536천원 위로가산금: 80천원
2.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3.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기본급: 1,307천원
4.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기본급: 439천원 추가지원금: 114천원(제2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비고: 보상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금을 말한다.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31조 관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상이등급별	월 정지금액(천원)	상이등급별	월 정지금액(천원)
1급 1항	1,535	3급	1,095
1급 2항	1,535	4급	672
1급 3항	1,535	5급	293
2급	1,279	6급 1항	133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6·25참전 제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구분	월 정지금액(천원)
가.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1) 배우자	312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607
3) 부모 또는 조부모	280
나.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와 6·25참전 제일학도의용군인의 유족	
1) 배우자	66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24
3) 부모 또는 조부모	40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의 유족	
1) 배우자	20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280

비고: 사망한 사람이 2명 이상인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한 사람 1명당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에 해당하는 월 정지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정지한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3(중상이부가수당) ① (생략) ② 법 제16조에 따른 중상이부가수당의 월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u>249만2천원</u>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u>172만4천원</u>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u>105만원</u>	제26조의3(중상이부가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 <u>263만원</u> 2. ----- ----- <u>181만8천원</u> 3. ----- ----- <u>110만8천원</u>
제27조의4(4·19혁명공로수당) 법 제16조의4에 따른 4·19혁명공로수당의 지급액은 월 <u>36만1천원</u> 으로 한다.	제27조의4(4·19혁명공로수당) ----- ----- ----- <u>40만1천원</u> -----.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등록(이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하여 이영 시행 후에 등록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	제10조(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 ----- ----- -----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국가유공자,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는 제23조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지급 구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구분	지급대상	월지급액 (천원)
1.~7.(생략)		
8.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법 제4조제1항 제4호·제6호·제 12호 및 제17호 에 해당하는 사 람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가. 1급 1항	2,492
	나. 1급 2항	1,724
	다. 1급 3항	1,050
비고(생략)		

② 이 영 시행 당시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되는 경우를 포

구분	지급대상	월지급액 (천원)
1.~7.(생략)		
8.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법 제4조제1항 제4호·제6호·제 12호 및 제17호 에 해당하는 사 람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가. 1급 1항	2,630
	나. 1급 2항	1,818
	다. 1급 3항	1,108
비고(생략)		

② -----

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6조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상이등급 구분에 따른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1. 1급 1항: 276만3천원
2. 1급 2항: 265만9천원
3. 1급 3항: 255만6천원
4. 2급: 88만3천원

1. ----- 291만5천원
2. ----- 280만5천원
3. ----- 269만7천원
4. -- 93만2천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5420